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조선왕조실록·의궤 등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립고궁박물관 소속으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재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정원 1명(9급 1명) 및 궁능유적본부의 정원 3명(6급 1명, 9급 2명)을 감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문화재청의 정원 9명(7급 7명, 8급 2명)과 국립고궁박물관의 정원 1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문화재청의 정원 12명(6급 5명, 7급 5명, 8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5명, 6급 5명, 7급 2명)하여 배정하며, 유적 관리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현충사관리소의 정원 1명(5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고, 방승무대 인력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하

여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며,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강원도,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전환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원의 2차 소속기관 일부의 관할구역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것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①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학예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주요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심사평가
3. 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 수립·조정·시행
4. 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소속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관리
6. 보안 및 관인관수
7. 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 및 보존
8. 예산·회계 및 결산
9.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10. 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
11. 전시 관련 기획·운영·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관리
12.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13.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

1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

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수집 및 보관·관리

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전시 및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제2항 중 “행정사무관으로”를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로 한다.

제25조의 제목“(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장”을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으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 ①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별표 1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관할구역란 중 “충청북도·강원도”를 “충청북도·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역로 75	전북특별자치도
------------	-------------------------	---------

별표 5 중 총계 “289”를 “286”로 하고, 일반직 계 “288”을 “285”으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을 “8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6”을 “45”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5의2 중 총계 “298”을 “295”으로 하고, 일반직 계 “297”을 “294”로 하며,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을 “89”로 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51”을 “5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을 “2”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2”를 각각 “46”으로 하고, 행정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및 행정주사보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하며, 학예연구사 “15”를 “17”로 한다.

별표 8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3”을 각각 “47”로 하고, 행정주사 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를 신설하며, 행정주사·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및 행정주사보 “2”를 각각 “1”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를 신설하고, 학예연구관 “5”를 “6”으로 하며, 학예연구사 “15”를 “17”로 한다.

별표 10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1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을 각각 “47”로 하고, 행정주사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 5 다음에 “행정주사·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송무대주사보 1”를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48”을 각각 “47”로 하고, 행정주사 “6”을 “5”로 하며, 행정주사 5 다음에 “행정주사·방송무대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다음에 “행정주사보 또는 방송무대주사보 1”를 신설하며, “방송무대주사보 1”를 삭제하고, 학예연구사 “13”을 “12”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8”을 각각 “20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5”를 “204”로 한다.

별표 17의2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220”을 각각 “21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9”를 “206”로 한다.

별표 19는 별지와 같이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7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61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4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4년 1월 1일”을 “2026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19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9]

문화재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관련)

1.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8월 9일)

총계	4
일반직 계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	1
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관	1

2.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2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u>		
		① <u>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u> 은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u>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u> 중 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조정		
		2. <u>주요사업계획의</u> 수립·조정·심사평가		
		3. <u>관람만족도 향상계획의</u> 수립·조정·시행		
		4. <u>국내·외 기관과 교류·협력</u> 에 관한 사항		
		5. <u>소속공무원의 복무·교육훈련</u> 그 밖의 인사관리		
		6. <u>보안 및 관인관수</u>		
		7. <u>문서의 접수·발송·통제·발간 및 보존</u>		
		8. <u>예산·회계 및 결산</u>		
		9. <u>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u>		
		10. <u>청사와 시설의 관리 및 방호</u>		
		11. <u>전시 관련 기획·운영·홍보 및 전시실의 운영·관리</u>		
		12. <u>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u>		

		<u>13. 소장유물 보존·관리 및 수장고의 관리</u>	
		<u>14. 유물의 복제·복원·복사·모조 및 촬영에 관한 사항</u>	
		<u>15. 소장유물, 관련 문화유산 및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수집 및 보관·관리</u>	
		<u>16. 그 밖에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의 운영·전시 및 유물관리에 관한 사항</u>	
<u>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생략)</u>		<u>제15조(현충사관리소) ① (현행과 같음)</u>	
② <u>현충사관리소에</u> 기획운영과 및 관리과를 두되, 기획운영과장은 <u>행정사무관</u> 으로, 관리과장은 <u>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행정사무관·임업주사·시설주사</u> 또는 <u>행정주사</u> 로 보한다.		② ----- ----- --- <u>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u> 으로-----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제2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u> 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u>제25조(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① -----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u> ----- ----- -----.	
② <u>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u> 에 두는 공무원의 직		② <u>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u> -----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이 규	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
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	-----
되는 별표 5의2의 정원 10명(행	-----
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	-----
무관·임업사무관·시설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전산사무관	-----
·학예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
4명,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	-----
주사·임업주사·시설주사·방	-----
재안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	-----
예연구사 4명, 행정주사보·공	-----
업주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	-----
사보·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	-----
구사 2명)은 <u>2023년 12월 31일</u>	----- <u>2025년 12월 31일</u> -----
까지 존속하고, <u>2024년 1월 1일</u>	----- <u>2026년 1월 1일</u> -----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
·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	-----
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	-----
구사 4명, 행정주사보·공업주	-----
사보·임업주사보·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
4명 및 행정서기·공업서기·	-----
임업서기·시설서기 또는 전산	-----
서기 2명으로 본다.	-----.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② -----

별표 15의2의 정원 2명(행정사	-----
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u>2023</u>	----- <u>2025</u>
<u>년 12월 31일</u> 까지 존속하고, <u>20</u>	<u>년 12월 31일</u> ----- <u>2026</u>
<u>24년 1월 1일</u> 이후에는 그에 해	<u>년 1월 1일</u> -----
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1명,	-----
행정주사보 1명으로 본다.	-----.

[별표 5]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		289		286	-3	
	.		.		.		
	.		.		.		
일반직 계			288		285	-3	
	.		.		.		
	.		.		.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 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		89	-1	
	.		.		.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46		45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3		2	-1	
	.		.		.		

.	.	.	
---	---	---	--

[별표 5의2]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21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98	295	-3
일반직 계	297	294	-3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임업주사·시설주사·방재안 전주사·전산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90	89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임업 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 보 또는 학예연구사	51	50	-1
사무운영서기보	3	2	-1

.	.	.	
.	.	.	

[별표 8]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2</u>	<u>46</u>	+4
일반직 계	<u>42</u>	<u>46</u>	+4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2</u>	<u>1</u>	-1
행정주사보	<u>2</u>	<u>1</u>	-1
·	·	·	
<u>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학예연구관	<u>5</u>	<u>6</u>	+1

학예연구사	<u>15</u>	<u>17</u>	+2
·	·	·	

[별표 8의2]

국립고궁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3</u>	<u>47</u>	+4
일반직 계	<u>43</u>	<u>47</u>	+4
·	·	·	
·	·	·	
<u>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u>2</u>	<u>1</u>	-1
행정주사보	<u>2</u>	<u>1</u>	-1
·	·	·	
<u>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u>	<u><신 설></u>	<u>1</u>	+1
·	·	·	
·	·	·	
학예연구관	<u>5</u>	<u>6</u>	+1

학예연구사	<u>15</u>	<u>17</u>	+2
·	·	·	

[별표 10]

현충사관리소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행정사무관·임업사무관</u> <u>또는 시설사무관</u>	<u><신 설></u>	<u>1</u>	+1
<u>행정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별표 15]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8</u>	<u>47</u>	-1
일반직 계	<u>48</u>	<u>47</u>	-1
•	•	•	
•	•	•	
행정주사	<u>6</u>	<u>5</u>	-1
<u>행정주사·방송무대주사</u> <u>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u>행정주사보 또는</u> <u>방송무대주사보</u>	<u><신 설></u>	<u>1</u>	+1
<u>방송무대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학예연구사	<u>13</u>	<u>12</u>	-1
•	•	•	

[별표 15의2]

국립무형유산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48</u>	<u>47</u>	-1
일반직 계	<u>48</u>	<u>47</u>	-1
•	•	•	
•	•	•	
행정주사	<u>6</u>	<u>5</u>	-1
<u>행정주사·방송무대주사</u> <u>또는 학예연구사</u>	<u><신 설></u>	<u>1</u>	+1
•	•	•	
•	•	•	
<u>행정주사보 또는</u> <u>방송무대주사보</u>	<u><신 설></u>	<u>1</u>	+1
<u>방송무대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	•	•	
학예연구사	<u>13</u>	<u>12</u>	-1
•	•	•	

[별표 16]

국립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8</u>	<u>207</u>	-1
일반직 계	<u>208</u>	<u>207</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5</u>	<u>204</u>	-1
•	•	•	

[별표 17의2]

공능유적본부 공무원 정원표(제22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20</u>	<u>217</u>	-3
일반직 계	<u>220</u>	<u>217</u>	-3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9</u>	<u>206</u>	-3
·	·	·	